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되어,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15의 7」 및 「별표22」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리핀의 영역(안 제2조제1호머목 신설)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나. 원산지결정기준(안 제4조제23호 및 별표 15의9 신설)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함.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7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17호 신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 발급 방식으로 함.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안 제8조제13항 신설)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함.

마. 원산지증명서의 대체발급(안 제10조제12항)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안 제15조제22항, 별표 20의5 및 별지 제24호의 11·12 서식 신설)

기관발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 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함.

사. 원산지 조사 방법(안 제24조제22호 신설)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아.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통지 기간(안 제25조제1항)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자.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3항제12호 신설, 제30조제1항)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
견품 및 시연용 영상매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차. 관세 당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필리핀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 도입
(안 제7조제2항15호, 제15조제19항제2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
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
도록 함.

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15의 7,
별표22)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15의 7」 및 「별표22」의 품목번호, 품명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1.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제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1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것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2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로 한다.

제15조제19항제2호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 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협정에서 정하는 서류

나. 별지 제24호의12서식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

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나.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 후단 중 “제3.23조 및”을 “제3.23조,”로, “제3.23조에”를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제4항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중미 공화국들”을 “·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캄보디아와”를 “캄보디아·필리핀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별표 15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11 서식, 별지 제24호의 1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 단서, 제15조제19항제2호의 개정 규정, 별표15의7 및 별표22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제15호의 단서, 제15조제19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 러.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 가. ~ 러. (현행과 같음) <u>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u>
2. ~ 16. (생 략)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2. (생 략) <신 설>	2.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 <u>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u> 」(이하 “ <u>필리핀과의 협정</u> ”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u>별표 15의9</u>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신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
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
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단서 신설>

16. (생략)

<신설>

①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
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
한 것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다만, 일본, 호주 또는 뉴
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제3.16조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것도 포함한다

16. (현행과 같음)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
가의 규칙 제2조제1항 및 법

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⑮ (생략)

⑯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⑳・㉑ (생략)

<신설>

--. -----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⑮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⑳・㉑ (현행과 같음)

㉒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21. (생략)

<신설>

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협정에서 정하는 서류

나. 별지 제24호의12서식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

1. ~ 21. (현행과 같음)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

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나.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

-----.

제3.23조, -----

--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의 규칙 제15조

제4항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 등) ① -----

-----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

-----.

----- 캄보디아·필

리핀과-----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 11.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17.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11. (현행과 같음)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

-----.

1. ~ 17. (현행과 같음)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현행과 같음)